

파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개정이유

- 일선 중·고등학교의 종합석차 산정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장학생 선발에 필요한 추천서 발급에 어려움이 있어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과목별 성취도 평정점으로 적용하여 선발하고, 예·체·능 특기장 학생에 대하여 선발요건을 구체화하여 통·리장 자녀장학금 지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장학생 자격요건중 성적평정을 종합석차 산정제도 폐지에 따라 종합석차율에서 과목별 성취도 평정점으로 적용(안 제2조제1호)
- 예·체·능 특기장학생 자격요건중 확인이 불가능하고 애매모호한 선발요건을 구체화하여 판단기준 명확화(안 제2조제2호)

□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교육부가 지난 '96. 9월에 마련한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지침('96. 9. 2 교육부 예규 제247호)」에 의거 종합석차 산정제도를 폐지하고 국어·영어·수학 등 과목별 석차만 산출하고 있어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이에 부합되게 조정함과,

○ 예·체·능 특기장학생의 자격요건중 확인이 불가능하고 애매모호한 선발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였기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 동 개정조례안의 내용중 「시단위 대회」를 「시·군단위 대회」로 명시하여 특기장학생의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통·리장의 자녀가 군단위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하였을 경우 특기장학생으로 선발하는데 혼동이 없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